

대구가톨릭대학교 기금운용 지침서



재무팀

1장 개요

- 제1조(서문)** ① 본 기금운용 지침서는 대구가톨릭대학교 기금운용의 명문화된 근거이자 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② 본 기금운용 지침서는 기금운용 과정 전반에 대한 지침서로 사립학교법 및 동법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법률 및 동법에 대한 특례규칙 등 관련된 법을 준수하며, 기금운용 관련 원칙 및 기준 등을 정한다.
- ③ 본 기금운용 지침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효력을 발생하며 지침서의 내용은 1년 단위로 검토 및 수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본 기금운용 지침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판매사, 운용사, 자문사, 대구가톨릭대학교의 교직원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과 관련을 맺고 있는 모든 조직 및 인력을 그 적용 대상으로 한다.
- ⑤ 본 기금운용 지침서의 제 규정은 기금운용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에 참고되고 준수되어야 한다.

- 제2조(기금의 특성)** ① 본 기금운용 지침서에 적용받는 기금은 원금보존기금과 임의기금(연구, 건축, 장학, 퇴직, 특정목적) 및 기타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정하는 특정기금으로 발생한 기금이다.
- ② 이들 기금은 투자기간 및 위험감수 정도 등을 감안하여 단기기금과 장기기금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2장 기금 운용목표 및 투자원칙

- 제3조(운용목표)** ① 단기기금의 운용목표는 대학의 유동성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원본 손실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수익률을 창출하여야 한다.
- ② 장기기금은 위험한도 내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용하여 기금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면서 대학교육 및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향후의 지출에 부응하도록 수익을 창출하여야 한다.

- 제4조(투자원칙)** ① 단기기금은 안정성을 기본으로 한다. 따라서 단기기금은 대학의 유동성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익성을 도모하여 기금의 확대 조성에 기여한다.
- ② 장기기금의 운용과정에 가장 중요한 원칙은 분산투자 원칙이다. 분산투자의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운용 수익률의 변동성 (volatility)을 감소시키고, 특정 투자 기금군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분산투자의 원칙은 투자과정 전반에 걸쳐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
- ③ 장기기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특별히 따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자본손실 위험 등 투자 리스크를 감안하여 외부 전문운용기관을 통한 간접투자를 통해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그 운용방식이 대학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대학이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여 기금운용 과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3장 주요조직 및 의무

-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연간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받고 그 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감독한다.
- ② 기금배분, 기금운용, 성과평가를 위한 기준수익률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 ③ 기금의 투자 및 운용에 있어 내재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허용한도를 심의하고 설정한다.
- ④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기 위하여 외부 위탁 운용사를 선정할 수 있다.
- 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 제6조(재무팀)** ① 대학 사무처장과 재무팀 직원들은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연간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운용과 관련된 사항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
 2.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투자를 집행하고, 투자된 기금을 관리·보전하고 회계를 책임진다.

3. 기금운용과 관련된 대학 내부 및 외부 집단들과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기금운용이 계획한 바와 같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4. 기타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책임을 수행한다.
- ② 재무팀은 연간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2. 기금 종류별 운용계획
 3. 기금 종류별 기준수익률 및 목표수익률
 4. 기금운용계획과 대비하여 기금조성의 초과·미달 시 조정 기준
- ③ 대학 재무팀은 연간기금운용계획을 직전 학년도 회계결산 보고일(5월말) 전까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의 의무) ① 기금운용에 관련된 교직원 및 외부인사(이하 “위원”)는 기금을 관리, 운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원은 관계법령, 기금운용 관련 제반규정 및 지침 등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기금운용에 따라 요구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과 관련된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기금을 운용했을 경우에는 그 손실 발생만을 사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2. 위원은 주의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전문역량의 유지 및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위원은 기금운용에 있어서 적절한 연구와 조사에 의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의사결정을 하되 합리성과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적절한 기록들을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4. 위원은 업무상 취득한 투자정보 및 기타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금한다.
5. 위원은 투자를 행함에 있어 유가증권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주의와 판단으로 하여야 하며, 발행회사 등에 개인적 이해관계나 특수관계가 있으면 이를 소속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분석이나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체의 금품, 향응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4장 목표수익률 및 허용위험 한도

제8조(목표수익률) ①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목표수익률을 설정한다.

② 목표수익률은 기금의 실질가치를 유지하고 대학지원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최소 예상물가상승률+ α 로 설정한다.

제9조(허용위험) ① 총 허용위험 한도는 3년 동안의 총 포트폴리오의 누적수익률이 0%를 초과하지 못할 가능성을 5% 이하(즉, Shortfall Risk \leq 5%)로 설정한다.

5장 기금배분과 기준수익률

제10조(기금배분) ① 기금배분이란 투자대상 기금군을 분류하고, 기금군의 상대적 비율을 결정하여 기금운용의 기준수익률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기금배분은 시가 기준으로 기금군에 투자될 기금의 비중을 제시한다. 그러나 실제 기금배분은 현재 또는 예상 시장조건 등에 좌우되므로 기금배분 비중에 허용 변동폭을 둔다.

③ 기금배분은 단기기금과 장기기금으로 구분하여 설정한다.

④ 이들 기금의 기금배분 사에는 투자대상 기금의 위험과 기대수익률 그리고 유동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각종 위험 및 수익 지표의 검토를 통해 각 기금운용의 가장 적합한 목표 기금배분과 기준수익률 및 허용위험 한도를 도출한다.

⑤ 기금운용에 있어 새로운 투자상품을 반영하고, 수익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투자대상 기금군의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검토·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기준수익률) ① 기준수익률은 기금군별 또는 기금종류별로 해당 시장의 평균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수익률을 의미한다. 기금운용 시에 각 기금군별로 적정한 기준수익률을 설정하고 이에 준하거나 초과하는 수익률을 올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금배분, 기금운용, 성과평가 시 동일한 기준수익률 기준에 의하여 업무가 수행되어야 하며, 특정한 투자 스타일 또는 전략을 채택하는 경우 이를 위한 기준수익률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한다.

6장 위험관리

제12조(위험관리) ① 기금의 투자 및 운용에 있어 내재된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고 위험이 초래할지도 모를 손실에 대하여 대비하여야 한다.

② 위험의 인식범위는 기금의 안정성 및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금운용 조직의 제반 업무활동 및 기금의 운용 등이며 인식대상은 시장위험, 신용위험, 유동성 위험, 법규위험, 운영위험 등이다.

1. 인식된 위험이 계량화가 가능한 경우 해당 위험량은 시장 데이터 등 객관적인 자료 및 통계치를 근거로 측정하여야 한다.

2. 그리고 측정된 위험량을 총위험과 기금종류별 위험허용한도를 설정 하여야 한다.

제13조(위험관리 업무) 위험관리에 관한 업무는 재무팀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자문사, 외부 운용사 등의 협조를 받아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설정된 허용위험한도를 초과하였을 경우 기금운용조직은 적절한 위험경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허용위험한도 등 위험관리와 관련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거쳐 변경한다.

7장 성과평가

제14조(성과관리) ① 기금운용 실적에 대한 평가는 기준수익률 대비 초과수익률과 기금배분효과 등의 수익률평가와 위험관리에 대한 평가 등의 정량평가와 운용시스템에 대한 정성평가를 포함한다.

② 성과평가는 절대적 성과와 상대적 성과로 구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주기적으로 보고되어야 한다.

③ 성과평가에 기초하여 내부의 투자실무진에 대한 보상을 달리할 수 있다.

④ 외부 위탁 운용사의 지속여부 등은 성과평가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8장 외부 위탁운용사 선정

- 제15조(위탁운용사 선정)** ① 외부위탁운용사는 은행업법에 의한 시중은행(특수은행을 포함), 간접투자기금 운용업법에 의한 기금운용회사 및 투자자문사이다.
- ② 외부운용 시 위탁운용계약에는 운용대상 및 방법, 운용준수사항, 기준수익률, 손실허용한도, 성과측정 등을 포함함으로써 운용사가 자의적으로 운용방식을 변경하거나 과도한 위험을 선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위탁운용과 관련된 기본수수료 및 성과수수료는 업계평균수수료를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지급하도록 하며, 과도한 덤핑입찰을 금지한다.
- ④ 위탁운용사의 투자내역, 운용사 및 펀드매니저 동향 등에 관해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9장 기금운용 지침

제16조(기금의 구분) 적립된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위탁 운영사에 예치한다.

1. 단기간(1년) 내에 인출되어야 하는 단기기금
2. 원금보존성 기금 등 장기투자(3년)에 적합한 장기기금

제17조(투자규모) ① 적립된 기금 중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2조의 2에 따라 비등록금회계에서 적립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50%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에 투자할 수 있으며, 별표 2 투자성향별 적합한 금융투자상품 구분표에 따라 투자 비율을 정하여야 한다.

1. 매 학년도 기금운용계획에 투자성향 등급별 투자 비율을 정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투자등급별 기금을 배분하여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상품별 만기일자를 고려하여 별표 3 투자등급별 투자규모의 $\pm 10\%$ 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② ①항 이외의 기금은 예금·적금 또는 신탁을 하거나 금융회사가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한 어음이나 그 밖의 채무증서를 매입할 수 있다.

제18조(투자성향) ① 투자기간, 투자경험, 투자대상 상품의 지식수준 등을 고려하여 투자성향을 결정하고,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에 투자하여야 한다.

② 5단계 투자성향 중 적극투자형으로 운용하며, 투자성향의 변경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결정한다.

공격투자형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
-------	--------------	-------	-------	-----

적극투자형 :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 실현을 추구하며, 투자자금의 상당 부분을 주식, 주식형펀드 또는 파생상품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성향입니다.

제19조(투자상품 매입) ① 증권 상품은 별표 1의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표의 투자성향에 해당하는 상품만 가입할 수 있으며, 초고위험 상품은 투자하지 않는다.

② 예금성 상품은 정기에금에 예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정금전신탁 상품 및 보험상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품은 가입할 수 있다.

1. 특정금전신탁 상품 중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정기에금(2금융권)형과 채권형 가입할 수 있으며, 증권형이나 주식형 등의 상품은 가입하지 않는다.
2. 보험상품은 저축보험만 가능(보장성보험 불가)하며, 이율이 1년 만기 정기에금 이자수입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투자상품을 신규로 가입하거나 재예치할 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무처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1. 동일한 상품으로 재예치하는 경우
2. 투자위험 등급이 중위험 이하인 경우

[별표 1]

<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표 >

금융투자상품 위험등급		초고위험(1등급)		고위험(2등급)	중위험(3등급)	저위험(4등급)	초저위험(5등급)
고객 투자성향		공격투자형(1등급)		적극투자형(2등급)	위험중립형(3등급)	안정투자형(4등급)	안정형(5등급)
펀드 (집합투자증권)		매우높은위험 (1등급)	높은위험 (2등급)	다소높은위험 (3등급)	보통위험 (4등급)	낮은위험 (5등급)	매우낮은위험 (6등급)
채권	국내	민행사에서 평가 안되는 채권		BB+이하 채권	회사채(BBB+ ~ BBB-)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A-이상)	국고채, 통안채 지방채, 보증채
	해외 (국제신용등급)	BB+이하		BBB+ ~ BBB-	A+ ~ A-	AAA+ ~ AA-	
CP		신용등급이 없		나 B이하	A3- ~ A3+	A1+ ~ A2-	
전자단기사채	원화				A3- ~ A3+	A1+ ~ A2-	
	외화			A3- ~ A3+	A1+ ~ A2-		
RP						외화RP	원화RP
CMA							RP형, MMF형, MMW형
파생결합증권	ELS/DLS	원금 비보장형			원금 부분지급형		
	ELW	ELW					
	ETN	ETN					
파생결합사채	ELB/DLB					원금 지급형	
신탁	주식형	해외주식, 초고위험 국내주식, 당사 종목별 신용등급 D이하 국내주식, 파생상품에 투자		고위험 국내주식에 투자			
	채권형 CP형 ELS/DLS형 펀드형 기타자산형			상품 유형별 권입자산(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기준에 따름 (ETF형 상품은 펀드형 상품의 위험도 분류기준에 따름)			
	자산주식형은 중위험으로 분류						
Wrap	주식형	해외주식, 초고위험 국내주식, 당사 종목별 신용등급 D이하 국내주식, 파생상품에 투자		고위험 국내주식에 투자			
	채권형 ELS/DLS형 펀드형 ETF형			유형별 권입자산(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기준에 따름 (ETF형은 펀드형의 위험도 분류기준에 따름) ※ 해외채권 및 해외투자펀드(채권형)에 투자한 경우, 한해지 여부에 따라 위험도 분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자산배분형			권입자산의 위험도 가중치에 따라 분류 (권입되는 채권형 상품은 채권 실물 및 채권형펀드 모두 포함)			
	지정운용형	신안EMA, 프로주식합					
주식	국내	선용거래, 투자경고종목 관리종목, 투자위험종목 ETF종목, ETN종목		일반종목			
	해외	해외주식 글로벌ETF, 홍콩ELW					
파생상품	국내	국내 선물/옵션					
	해외	해외 선물/옵션, FX마진					
ISA	일임형			고위험A, 고위험P	중위험A, 중위험P	저위험A, 저위험P	
	신탁형			가중치가 운운 지시한 권입자산의 위험도 가중치에 따라 분류			예금, RP, 인금성자산
확적연금상품	원리금 보장형					확적연금전용ELB	정기예금, 확적연금전용RP 확적연금마을보증형보험GIC
	원리금 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ELS/DLS),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등 해당 금융상품의 위험도 분류기준에 따름			

[별표 2]

< 투자성향별 적합한 금융투자상품 구분표 >

집합투자증권(펀드)	매우높은위험	높은위험	다소높은위험	보통위험	낮은위험	매우낮은위험
펀드 외 금융투자상품	초고위험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초저위험
공격투자형(1등급)	○	○	○	○	○	○
적극투자형(2등급)			○	○	○	○
위험중립형(3등급)				○	○	○
안정추구형(4등급)					○	○
안정형(5등급)						○

※장외파생상품을 제외한 상품에 한함

[별표 3]

< 투자등급별 투자규모 >

적립금	투자등급	투자규모	최대 비율 ± 10%
60%			
40%	최고위험	투자하지 않음	
	고위험	55%	± 10%
	중위험	21%	
	저위험	24%	
	최저위험		
100%	합계	100%	